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. . .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2018. 3. 27. 시행)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,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심사방법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다.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및 매각재산 인도(안 제8조, 안 제9조)
- 라.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, 매각대행수수료 청구(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)
- 마.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및 협의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1조의2
- 나.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4조의2, 제74조의3
- 다.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52조의2, 제52조의3

4.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따로 붙임(의견 미반영)

라. 입법예고: 2018. 6. 4. ~ 2018. 6. 25.(의견없음)